

肢體障礙人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實態 分析

- 영주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황용운*

Hwang, Yong-Woon

김요찬*

Keum, Yo-Chan

Abstract

The disabled peoples increase in number by disasters from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in using the facilities in the public buildings. So, this survey propos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handicapped peoples to use without any trouble in public buildings. The objects of investigation were public buildings, village offices, a public library, synthesis hospitals, banks, an express bus station, a wedding building, a railroad station etc.. Conclusions were as follow : ① The most of buildings were established access road in regulations but parking area was established inappropriately in regulations ② The most of convenience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on first floor but were established barely in more than second floor. ③ The most of convenient facilities were established inappropriately in regulations. ④ The other convenient facilities(reception desk, ticket agency, work desk etc.) were not established nearly in the buildings of investigation.

Keywords : the handicapped, convenient facilities, public buildings

1.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들어 전반적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령, 제도개선¹⁾등 많은 진전이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각종 도시화 등에 의한 후천적 신체장애인이²⁾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체장애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 및 어린이에게 많은 물리적 장애를 만들어 장애인이 다른 정상인과 같이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평등하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물리적 환경상의 장애가 사회인의 편견과 함께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공성이 높고 요구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축물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방법 및 조사대상범위

1) 조사 방법

본 실태분석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중 가장 많은

* 동양대학교 건축·실내디자인학부 조교수

1) 1998.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1995년 1월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지체장애 원인 중 96.3%가 후천적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³⁾을 대상(표 1)으로 영주시 공공건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건복지부의(2001. 3)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 지침'⁴⁾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 '99)에서 언급된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및 계획기준을 기준으로 실측, 사진촬영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범위

조사대상 범위는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 지침⁵⁾의 별지양식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표(편의시설 정비현황표)를 참고하여 영주시 범위내에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사료되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24곳을 선정⁶⁾하였다. 각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규정에 의한 시행령 제4조 [별표 2]와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 지침,⁷⁾에 규정된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편의시설의 의미와 분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

표 1. 총 장애인수에 대한 지체장애인 비율

영주		전국	
총 장애인수	지체장애인수	총 장애인수	지체장애인수
3,675	2,057(55.97%)	1,178,471	701,565(59.53%)

영주(시청 사회복지과 자료제공)/전국 : 2002년 3월 기준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1.1 p.4

4)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5)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정비실태조사가 지침, 2001. 3

6) 편의시설 증진법 시행령에서 분류한 설치대상시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건물이 소수인 것은 영주가 인구 약 13만명과 9개동으로 이루어진 소도시로 공공도서관 1곳, 종합병원 2곳, 은행은 각 지점별로 1곳(농협의 경우 다수), 단독 건물로 사용하는 음식점 1곳으로 조사 대상 건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7) 2001. 3. p.6~p.10에 규정된 설계지침을 기준

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는 편의시설설치 대상 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 4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 '99)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 시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과 권장형 설치 사항⁸⁾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⁸⁾

시설	내용
근린생활시설	음, 면, 동사무소
판매 및 영업시설	여행자동차 터미널 등
의료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표 3. 조사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의무설치 종류⁸⁾

정비대상시설별편의시설	근린 생활 시설	교육 연구 복지 시설	의료 시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여행 터미널 판매 영업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출입구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설비	대변기	소변기
매개 시설	●	●	●	●	●								
내부 시설	●	●	●	●	●								
	●	●	●	●	●								
위생 시설	●	●	●	●	●								
			●	●									
안내 시설					●								
기타 시설		●		●									
	●			●									
					●								

●표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8) 상기 책의 p.5에 의무와 권장시설의 구분하고 시설별 적용강도(권장과 의무를 분류)를 분류하고 있다.

- 표 2와 3은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정비 실태 지침, 2001.3 p.5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관련 "별표2" 및 "별표4"참조

2. 지체 장애인의 현황

표 4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현황(2002. 3 기준)이며 또한 지체장애인이 전국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과 4에 의하면 인구수 및 장애인수의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인구수가 전년대비 매년 1% 미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수와 지체장애인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20~30%의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출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주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읍 면 지역)의 경우, (표 5와6) 대도시로 인구가동으로 인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인(가구) 출현율은 매년 증가(영주:15%~30%내외)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전국 지체장애인 등록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인구수 (전년대비 증가율)	장애인수 (전년대비 증가율)	지체장애 인수 (전년대비 증가율)	장애인 출현율 (장애인 수÷인 구)	지체장애 인 출현율 (지체장애 인÷장애 인수)
1997	46,885,255 (1.0%)	324,860	294,419	0.71%	90.63%
1998	47,173,959 (0.62%)	527,250 (62.30%)	371,328 (26.12%)	1.14%	70.43%
1999	47,542,573 (0.78%)	697,513 (32.29%)	502,647 (35.36%)	1.49%	72.06%
2000	47,976,730 (0.91%)	958,196 (37.37%)	606,422 (20.64%)	2.0%	63.29%
2002 . 3	48,289,173 (0.65%)	1,178,471 (22.99%)	701,565 (15.69%)	2.44%	59.53%

자료 :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의 자료로 재작성

표 5. 영주시 지체장애인 등록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인구수 (전년대비 증가율)	장애인수 (전년대 비증가율)	지체장애 인수 (전년대비 증가율)	장애인 출현율 (장애인수 ÷인구)	지체장애인 출현율 (지체장애인 ÷장애인수)
1998	134,897 (-0.35%)	1,748	1,165	1.30%	66.65%
1999	133,664 (-0.91%)	1,978 (13.16%)	1,338 (14.85%)	1.48%	67.64%
2000	131,351 (-1.73%)	2,995 (51.42%)	1,778 (32.88%)	2.28%	59.37%
2001	128,924 (-1.85%)	3,675 (22.7%)	2,057 (15.69%)	2.85%	55.97%

자료 : 영주시청 사회복지과 자료로 재작성

표 6. 2000년 전국 지역별 장애인 가구 출현율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부	계
장애자가 구수	241,455 명	283,802 명	365,504 명	413,949 명	1,304,7 10명
구성비	7.4%	7.7%	7.9%	13.2%	8.9%

참고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2001.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도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III. 조사대상 건물 조사 및 실태분석

1. 조사대상 건물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건물은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실태조사지침(2001. 3)의 공공건물⁹⁾ 및 다중이용시설¹⁰⁾ 범위를 기준으로 영주시 권역내의 동사무소 9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시민회관 1개소, 음식점 1개소, 종합병원 2개소, 시청, 버스여객터미널, 은행, 철도역 등 모두 24개소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건물은 모두 1998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건물(농협:2001년 준공)로 기존시설을 편의시설로 변경한 상태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건물을 2차(1차: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2차: 의료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나누어 조사대상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실측)와 사진촬영으로 이루어졌다.(표 7)

- 조사일정 - 제1차 : 2002년 6월 3일~5일(3일)
제2차 : 2002년 6월 10일~13일(4일)

2. 조사대상 건물의 시설별 편의시설 분류

본 실태조사의 시설별 조사대상 편의시설 종류 기준은 1998년 4월 공포되었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국어사전에서 '公共'을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과 정신적, 물리적으로 힘을 함께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공건물'이란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주체가 정해진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인 '불특정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물리적으로는 '열려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0)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0 m² 이상인 건축물(건축법령 제5조)

표 7. 영주시 조사대상건물

용도 구분	해당 시설(code)	개소
근린생활 시설	동사무소 상망동(D1), 하망동(D2), 휴천1동(D3), 휴천2동(D4), 휴천3동(D5), 영주1동(D6), 가흥1동(D7), 가흥2동(D8), 영주2동(D9)	9
교육연구/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영주공공 도서관(R)	1
의료시설	종합병원 기독교병원(H2), 성누가병원(H1)	2
업무시설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영주시청(A)	1
판매 및 영업시설	여객터미널/은행 시외버스터미널(T), 철도역(S), 대화예식장(W), 시민회관(C) /은행:농협(B1), 조흥(B2), 국민(B3), 기업(B4), 대구(B5), 서울(B6), 한빛(B7)	11
합 계		24

*표 2를 기준으로 조사대상건물을 선정

을 참고로 하고,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정비 실태 조사 지침에서 언급한 편의시설의 종류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사항만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표 3)

3. 건물조사 및 실태 분석

1) 매개시설

① 접근로, 주출입구 및 단차이

휠체어 및 목발을 사용한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주출입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여유공간과 휠체어 및 목발이 아무런 장애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설치기준: 통과 유효폭 0.8m(휠체어)이상, 0.9m(목발사용) 이상 및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회전문이 아닐 것. 출입구 단차이는 3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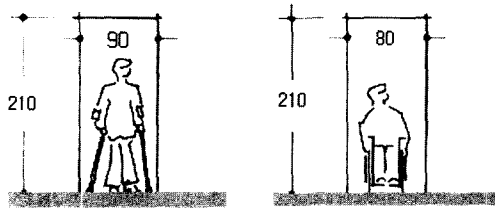


그림1. 휠체어(목발 장애인) 출입구 유효폭 (단위: cm)

여유공간이 필요하다.(그림 1)¹¹⁾

동사무소의 경우 9개소 대부분의 주출입구(유효폭), 단차이는 적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접근로의 경사로 경사가 대부분(15% 이상)¹²⁾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주출입구 앞의 여유공간이 협소한 것¹³⁾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는 주출입구 대부분 자재여단이문(양쪽방향여단이문)으로 이루어져 장애인 출입방향을 문을 개폐하게끔 고려된 것으로 사료된다. 영주도서관과 시민회관의 경우 2개소¹⁴⁾ 모두 접근로 및 여유공간이 충분했으며, 의료시설인 성누가 병원의 경우 장애인출입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접근하여 램프를 통하여 진입하게끔 되어있었고, 기독교병원은 주차장 및 전면도로에서 내부로 진입할 수 있

경사로(보도)기준(유효폭): 기울기 1/12 이하/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 1/8=12.5% 유효폭: 1.2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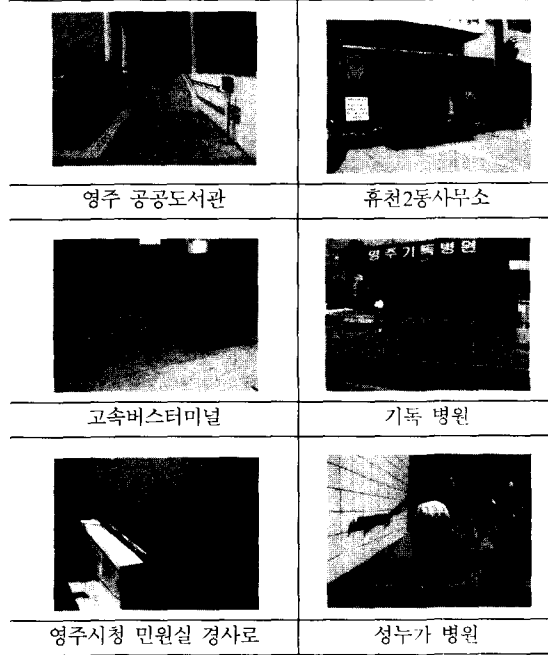


그림 2. 시설별 접근로 유형

- 1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
- 12) 경사로: 상망동 120:30=25%/ 하망동 360:44=12%/ 휴천3동 195:35=17%/영주1동 120:36=30%/영주2동 230:40=17%/가흥1동 240:38=16%/ 성누가병원 360:60=17% 기업은행 150:35=23%/ 대구은행 200:57=29% 등
- 1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전면 유효거리 설치기준은 1.2m이나 대부분 1.2m 이하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 14) 영주도서관 유효폭:3.5 m/영주문화회관 유효폭:1.35 m

는 경사로로 이루어졌지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경사로 시설은 응급차 및 환자용 이동침대의 수송을 원활하게끔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주시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부출입구를 계획하여 장애인을 위해 배려하고 있는 반면 유도표지가 가려져 있었고, 주차장 바닥의 장애인 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조사대상 건물인 은행의 경우, 주로 후면주차장의 부출입구 경사로를 통하여 객장으로 접근하게끔 되어 있었고 정면 출입구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계단과 경사가 심한 경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경사로의 유효폭(1.2 m), 바닥재질은 편의시설 증진법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반면에 경사로 손잡이는¹⁵⁾ 전무한(시청 제외) 상태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협외의 경우, 측면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하여 객장으로 접근하게끔 되어 있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접근에 큰 불편이 예상되었다. 정면입구의 경우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다른 은행과 같이 전무한 상태였다. 영주철도역의 경우에는 매표소까지 접근로, 여유공간, 주출입구 단차이, 경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장애인들 위해 배려가 잘 되어있었다. 반면에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비록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출입구 전면 인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뿐 아니라 택시정류장과 대중전화박스와 각종 가로 설치물 등으로 인하여 여유공간 배려가 없었다. 그러나 접근로와 출입구간의 단차이는 대부분 3 cm 이하로 장애인 출입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구역에서 차량의 문을 열어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폭과 차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선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조사대상 건물중 공공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사무소 9개소(영주1동 제외), 시청, 공공도서관, 시민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장애인 주

차장 설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건물 중 적절한 위치, 규모, 유도 및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공공도서관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내부시설

① 출입구

조사대상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 크기는 80 cm 이상 폭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단차도 3 cm 이하로

설치기준: 3.3 m 이상×길이 5 m (평행주차:2m×6 m 이상)
장애인 부설주차장 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상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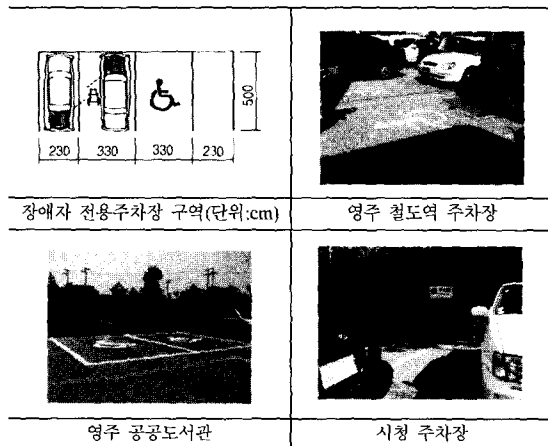


그림 3. 시설별 장애인 주차장 유형

편의시설 설치 기준령에 의하면 건물내부의 출입구는 그 폭이 80 cm 이상 확보(그림 1)되어야 하며 복도와 단차이는 3 cm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가능한한 1.5 cm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와 같이 출입구 전면 1.2 m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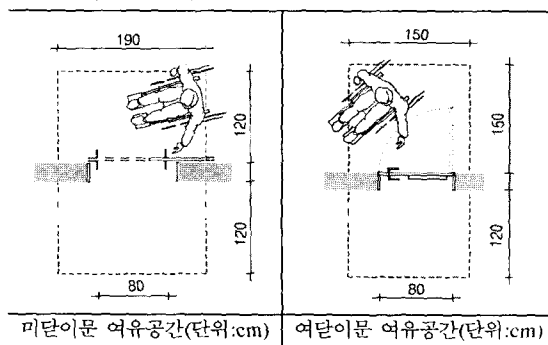


그림 4. 출입문 유형별 여유공간

15) 경사로 설치기준은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높이가 15 cm 이상인 경우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되었다. 교통시설의 경우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게 영주철도역은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전용개찰구를 설치한 반면에 버스터미널의 경우 전용 개찰구(그림 5)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복도

휠체어 장애인이 교행하는 경우 최소 1.64m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그림 5) 최소 1.8m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 건물 대부분이 원래 용도에 타 용도와 혼재하고 있어 단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복도가 조사된 건물은 병원 2개소, 음식점 1개소, 공공도서관, 시청, 시민회관으로 6개소이었다. 이들 6개소의 복도는 모두 1.8m 이상 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누가 병원의 경우 복도폭은 2.3m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출입문이 복도쪽으로 개폐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 교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독병원의 경우는 성형외과 병동¹⁶까지 복도측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조사대상 나머지 건물의 경우 2층 이상을 공공이 사용

하는 공간이라기 보다 특정인을 위한 공간¹⁷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③ 계단 또는 승강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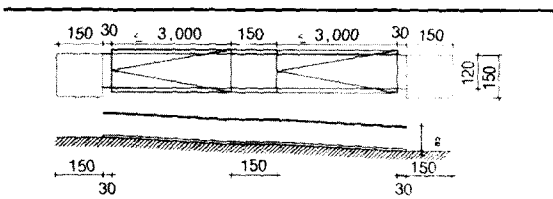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조사대상 건물 대부분이 2층 부분을 특정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2층 이상의 공간에 대하여 지체장애인을 위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였다. 복도가 조사된 6개소 건물 대부분의 계단 디딤판과 철크의 너비와 높이, 계단코, 계단폭이 규정에 부합¹⁸했고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계단 이외의 수직 동선 해결 수단인 엘리베이터의 경우 성누가병원은 환자용 엘리베이터(1.3m×2.4m)를 설치하여 2층 이상의 공간을 배려하였고 기독병원은 승강기¹⁹와 경사로를 같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사로의 경우 유효폭, 참부분의 여유공간이 규정에 적합하게 확보되어 있었지만 75cm 마다 휴식을 위한 수평면과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의 경우 복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휠체어교행을 위한 복도 폭 (단위: cm)</p>	<p>성누가 병원 복도 (복도쪽 개폐)</p>
<p>성누가 병원 복도 손잡이</p>	<p>철도역 장애인 전용개찰구</p>

그림 5. 시설별 장애인 출입구 및 복도



경사로기준 : 유효폭 1.2m 이상(90cm까지 완화 가능)바닥면으로부터 75c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는 수평면의 참을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부분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경사로 기울기 설치기준 (단위:cm)</p>	
<p>영주시청 휠체어리프트</p>	<p>기독병원 경사로</p>

그림 6.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16) 장애인전용시설 (성형외과 병동)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7) 동사무소 2층은 예비군 중대본부로, 은행,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의 2층 공간은 업무(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8)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계단으로 유효폭 1.2m 이상, 디딤판 너비 28cm 이상, 철크높이 18cm 이하 계단코 3cm 이하 돌출과 계단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19) 승강기의 설치기준 중 내부유효면적은 폭 1.1m×1.3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청사인 시청은 휠체어사용자의 수직 동선해결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영주공공도서관과 시민회관의 경우는 2층 이상 공간에 대해 휠체어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여 이들의 상층부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식장의 경우는 설치기준²⁰⁾ 이상의 충분한 크기인 엘리베이터(1.5 m×1.6 m)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위생시설

근린생활시설인 동사무소(2곳은 여자화장실과 겸용으로 사용)와 도서관, 시민회관, 영주시청의 경우는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대·소변기를 설치하였고, 의료시설의 경우 성누가병원은 적정규모의 장애인 대변기 소변기가 설치되어있는 반면에 기독교병원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은행의 경우 농협만 제외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한곳도 없었다. 또한 대부분 영업장을 통과하여 화장실로 향하게 되어있어 일반인도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고속터미널과 영주역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차이는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3 cm 이하 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화장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영주역 1개소 밖에 없었다. 농협의 경우 남여를 구분하여 장애인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했지만 대변기의 경우 일반화장실 크기²¹⁾와 같았고 소변기 후면 여유공간이 1 m 전후로 휠체어가 회전하기에도 부족한 공간이었다. 도서관, 시민회관은 대변기만 구분하여 설치하여 유효바다면적은 적절했지만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출입문이 안쪽으로 개폐되어 공간 활용도가 부족했다. 특히 고속터미널은 장애인 전용화장실로 대변기와 소변기, 세면대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설치기준에 적절하게 설치되었지만, 세면기 손잡이와 출입문 사이의 공간이 65 cm로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많은 장애가 있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

- 대변기 칸막이 크기: 폭 1 m×깊이 1.8 m/양변기 양옆 수평 수직 손잡이 설치/대변기 전면에 1.4 m×1.4 m 이상 활동 공간 확보/출입문 폭 0.8 m 이상 접이문 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소변기 - 양옆에 수평 수직 손잡이 설치
- 세면대 - 상단높이 0.85 m 이하, 하단높이 0.65 m 이상/하부는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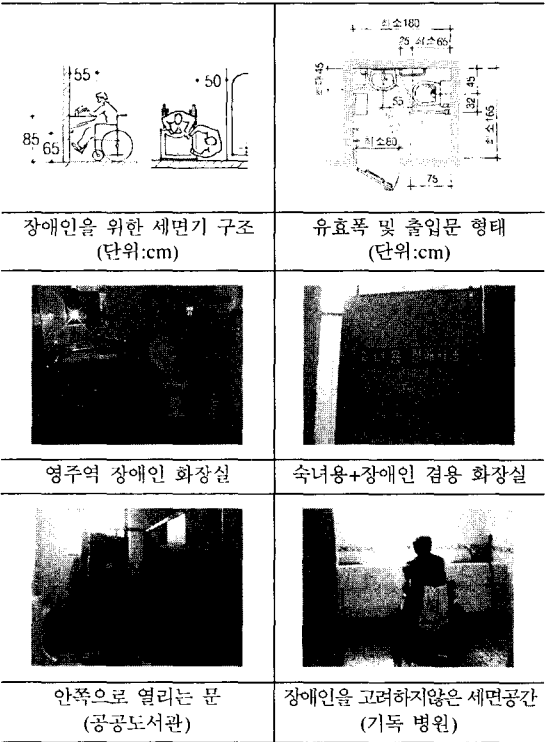


그림 7. 장애자 화장실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면기의 경우 조사건물 대부분이 일반 세면기를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

4) 유도·안내설비 및 경보 피난설비

일반적으로 유도 안내설비 및 경보 피난설비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유도 안내 설비를 의미한다. 비록 이런 설비들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아니라고²²⁾ 하지만 주출입구와 장애인 전용 출입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

20) 장애인용 승강기 크기 : 출입문 유효폭 0.8 m, 유효바다면적은 폭 1.1 m 이상×깊이 1.35 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농협: 0.95 m×1.20 m /하망동사무소: 1.2 m×1.9 m /상망동사무소: 1.5 m×1.7 m/휴천3동: 0.8 m×1.7 m/영주1동: 1.1 m×1.5 m/영주역: 1.7 m×2.0 m/영주도서관: 1.0 m×2.0 m 등으로 영주역을 제외하고는 안여닫이문으로 장애인들 사용에 큰 불편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2) 대부분 유도 안내시설의 경우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촉각 청각으로 구조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점자,촉지도식, 경보장치 등)로 조사대상건물 대부분이 거의 무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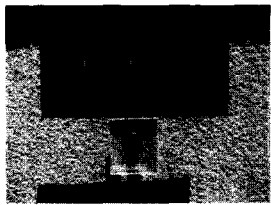
설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대상 건물 대부분 1층에 한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음성, 기타 유도장치 및 경보 피난설비는 전무한 상태였다. 시청의 경우도 장애인 전용 출입구 및 주차장이 후면과 정문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 및 안내판들이 식별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에 공공도서관만이 접근로 입구에 도움 요청 벨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가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타시설

① 열람석 및 관람석

조사대상 건물 중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 및 관람석의 조사 대상 건물은 시민회관과 공공도서관이 조사대상 건물이었다. 그러나 2개소 모두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 및 관람석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의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열람



영주 공공도서관 안내 유도벨

그림 8.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기준 :

전체 열람석(관람석)수의 1% 이상(2천석 이상인 경우 20석 이상)설치하여야한다. 휠체어 관람석 유효바닥면적 : 폭 0.9 m × 깊이 1.3 m 이상/1석 확보하고, 열람석의 경우는 상단까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 m 이상 0.9 m 이하, 열람석하부는 무릎,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 m 이상, 깊이 0.45 m 이상 공간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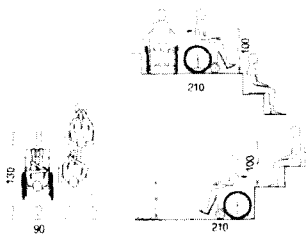


그림 9. 관람석 및 열람석구조 (단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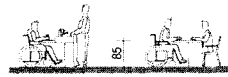
용 책상이 아니라 일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시민회관의 경우에도 관람좌석 제일 뒷부분 복도의 폭이 1.5 m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있지 않았다.

② 접수대/작업대/매표소 등

조사대상건물 중 이에 해당되는 시설로는 동사무소(접수대), 시청(민원 접수대), 은행(접수대), 병원(접수대), 시민회관(매표소), 철도역(매표소) 등이다. 동사무소와 시청의 경우 접수대 높이가 80 cm 전후, 바닥면으로 부터 60 cm 이상, 깊이 33 cm 이상으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설치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어느 정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사무소(접수대 높이 대부분이 90 cm 이하/ 깊이 35~40 cm)와 시청의 경우 비록 기준에는 부적합하였지만 높이와 깊이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 그 외 다른 조사대상건물들의 경우 대부분이 90 cm 이상 또는 작업대 및 접수대 아래 여유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을 고려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외 매표소, 음료대, 판매기 등은 점자표기라든지 휠체어장애자인을 위한 조작 스위치의 높낮이에 대한 배려는 조사건물 모두 전무하였다.

접수대 및 작업대 설치기준은 높이 70 cm 이상~90 cm 이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 cm, 깊이 45 cm이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매표소설치기준 : 높이 1.1 m 이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 0.4~1.2 m, 조작버튼 및 금액은 점자표시, 음료대 분출구 높이는 0.7~0.8 m



작업대와 접수대 구조(단위:cm)



일반인만 위한 접수대(은행)



시민회관 매표소



장애인을 고려한 접수대 (동사무소)

그림 10. 접수대 및 작업대 설치기준 및 유형

IV. 조사결과 및 결론

침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 24개소 공공건축물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정비 실태 지

1. 매개시설의 경우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모두 접근로의 경사로

표 8. 시설별 종합 조사 분석표

편의시설 분류	설치 비율 (%)	조사 대상 건물																							
		근린생활시설									교육 복지			의료 시설		업무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D1	D2	D3	D4	D5	D6	D7	D8	D9	R	H1	H2	A	B1	B2	B3	B4	B5	B6	B7	W	T	S	C
접근로	바닥마감	100	●	●	●	●	●	●	●	●	●	●	●	●	●	●	●	●	●	●	●	●	●	●	●
	경사로	54	○	●	○	●	○	○	●	○	●	○	●	●	●	●	●	●	●	●	●	●	●	●	●
	손잡이유·무	21	×	●	●	×	●	×	×	●	○	○	×	×	●	×	○	×	×	×	×	×	×	×	○
	유효폭	88	●	●	●	●	●	●	●	●	●	●	●	●	●	●	●	●	●	●	●	●	●	●	●
매개시설	주출입구	100	●	●	●	●	●	●	●	●	●	●	●	●	●	●	●	●	●	●	●	●	●	●	●
	단차(3cm↓)	88	●	●	●	●	●	●	●	●	●	●	●	●	●	●	●	●	●	●	●	●	●	●	●
	유효거리	75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자 전용 주차장	38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시설	주차장표기	38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크기	21	●	×	×	●	●	×	●	○	●	○	×	○	×	×	×	×	×	×	×	×	○	○	
	유도표기	21	●	×	×	●	●	×	×	●	×	●	×	×	×	×	×	×	×	×	×	×	×	×	×
	통로설치	25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시설	유효폭	100										●	●	●	●								●	●	●
	마감	100										●	●	●	●								●	●	●
	손잡이	14										×	●	×	×								×	×	×
	계단경사로	100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설비	손잡이 설치	0	×	×	×	×	×	×	×	×	×	×	×	×	×	×	×	×	×	×	×	×	×	×	×
	너비/높이	96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유·무	8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공간	8	×	×	×	×	×	×	×	×	×	×	●	●	×	×	×	×	×	×	×	○	×	×	×
위생설비	적정크기	8	×	×	×	×	×	×	×	×	×	×	●	●	×	×	×	×	×	×	×	○	×	×	×
	휠체어리프트	4	×	×	×	×	×	×	×	×	×	×	×	×	●	×	×	×	×	×	×	×	×	×	×
	대·소변기설치	17	●	●(대)	○(대)	○(대)	○(대)	×	○(대)	●(대)	○	○	×	○	○	×	×	×	×	×	×	×	○	●	○
	세면기 설치	4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시설	단차유무	58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크기	25	●	●	×	○	×	×	×	●	●	○	○	×	○	○	×	×	×	×	×	×	●	●	○
	손잡이설치	54	×	●	●	●	●	●	×	●	●	●	●	×	●	○	×	×	×	×	×	●	●	●	
	출입구유효폭	75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기호	유도·안내	-																							
	경보·피난	-																							
	열람석/도서관	0										×		○											
	작업대/접수대/매표소	4	○	○	○	○	○	○	○	○				×	×	●		×	×	×	×	×	×	×	×

● :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 :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 : 미설치된 경우 미표기 : 표 3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시켰음(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정비 실태 지침 참조 (표 3.)) A : 시청, B : 은행, C : 시민회관, D : 동사무소, H : 병원, R : 도서관, S : 철도역, T : 버스터미널, W : 예식장 (대) : 대변기만 설치된 경우 / 설치비율은 ●을 기준으로 하였음

의 경우 54%정도가 적절히 이루어졌지만, 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경사가 심한 형식적인 경사로 되어 있었고, 은행의 경우 2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무한 상태였다. 반면에 출입구 유효폭이나 단차이의 경우는 약 88%가 적절했지만 이는 일반인에 대한 시설배려가 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 적절히 설치된 비율은 35%(5곳)로 시급한 설치가 요구되었다.

2. 내부시설의 경우 출입구와 복도의 경우 대부분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계단 역시 유효폭과 너비, 첩면 높이²³등은 100%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 역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기 보다 일반인 대한 적용기준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 출입문 개폐방향이 복도쪽으로 향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또한 성형외과 병동마저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비록 조사대상 건물 대부분이 2층 이상 공간이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라 하지만 장애인들이 2층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승강설비는 조사대상건물의 8% 이하로 다른 시설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휠체어 장애인이 2층 이상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3. 위생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건물 중 25%만 적절한 크기였다. 이중 버스터미널의 경우 적절 크기였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게 설치되어있었다. 은행의 경우는 적절한 크기로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문이 안쪽방향으로 개폐되었고, 세면대의 경우는 조사건물 모두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4. 접수대/작업대/매표소 및 기타시설의 경우 4%에 해당하는 1곳만 적절히 설치되어있었다. 동사무소(접수대)의 경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조사대상 건물들의 편의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동사무소, 시청, 공공도서관

의 경우는 어느 정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설들이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대상 대부분의 시설들이 2층 이상에 대한 배려는 전무했으며, 1층에 국한되어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의 의미는 중소도시(읍, 면)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배려가 대도시에 비해 절실히²⁴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의 경우, 영세화로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비록 본 조사에는 지체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조사 분석했지만, 편의시설 자체의 이용자는 장애인만이 아닌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 만큼 다른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정보에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영주시가 크지 않은 중소도시(인구: 약 13만명)라 공공시설물들이 많지 않아 조사대상건물수가 제한적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위계 및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현실에 적합한 시설적 고려와 공간구성, 배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한정, 박철민, 김태일(2001), 제주지역 공공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1호 pp.207-210
2. 임상돈, 외2인(1987),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신체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시설의 실태조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7권 제2호 pp.179-182
3. 이현희, 김종영, 박용환(1990), 장애자를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1호 pp.59-68
4. 보건복지부(2001),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 지침.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6. 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1995),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7. 대한건축학회(1999), 복지 및 편의시설 그 현황과실태, 건축誌.
8.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9. <http://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23) 설치기준: 계단 유효폭 1.2 m 이상(옥외계단 0.9m), 디딤판너비 28 cm 이상, 첩면높이 18 cm 이하, 계단코는 3 cm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4) 표 6에서 중요소시와 읍 면 지역에서의 장애인 가구 출연율이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